

함께 알아보는

# 주민자치회



## 주민자치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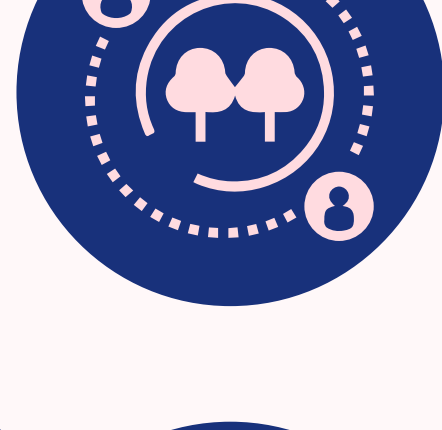
근린지역을 단위로 지역적 사무 및 문제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그들의 의사에 기초하고 자주적으로 처리 및 해결되는 것을 의미

## 주민자치회란?

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주민통합 및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에 설치·운영되는 대표적 주민조직체

## 주민자치회의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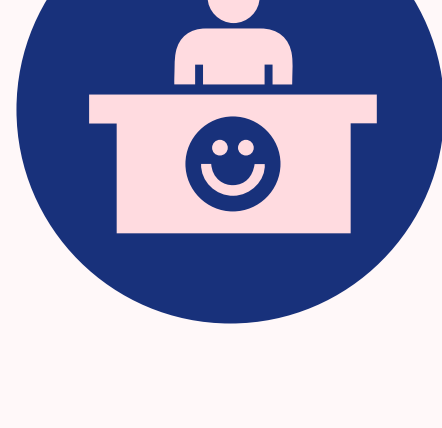
1.



### 근린 수준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

협력적 거버넌스는 참여민주주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과정으로서 강조 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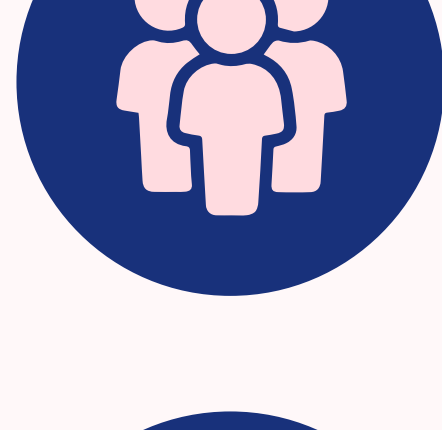
2.



### 지방자치의 중심축 변화에 따른 대응

기관 중심의 단체자치에서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로 지방자치의 중심축이 변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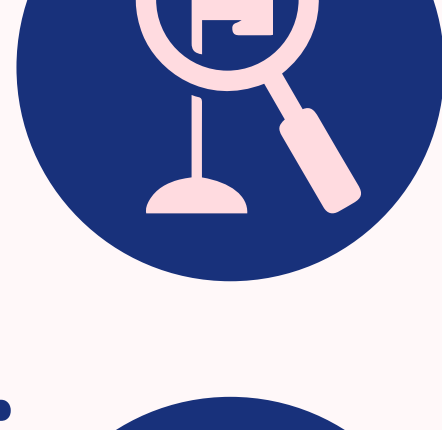
3.



### 읍면동 중심 행정서비스 실행과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

읍·면·동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주민자치조직이 필요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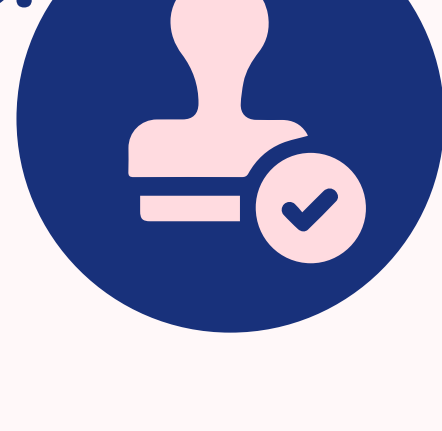
4.



###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의 구현

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

5.



### 주민권력 차원의 민주적 권한을 부여받는 주체로서 주민자치회 위상 확보

지역공동체, 주민단체, 시민조직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민조직에 대하여 지역사회내 의사결정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해어받는 조직으로 주요 주민자치회의 위상이 필요함

##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
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(주민자치회의 설치), 제28조(주민자치회의 기능), 제29조(주민자치회의 구성) 중

“제29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”에 근거하여 시범실시중

1단계

[2013.7 ~ 2014.12]

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실시

2단계

[2015.10 ~ 2017.6]

18개 읍면동 추가, 총 49개소 읍면동에서 실시

3단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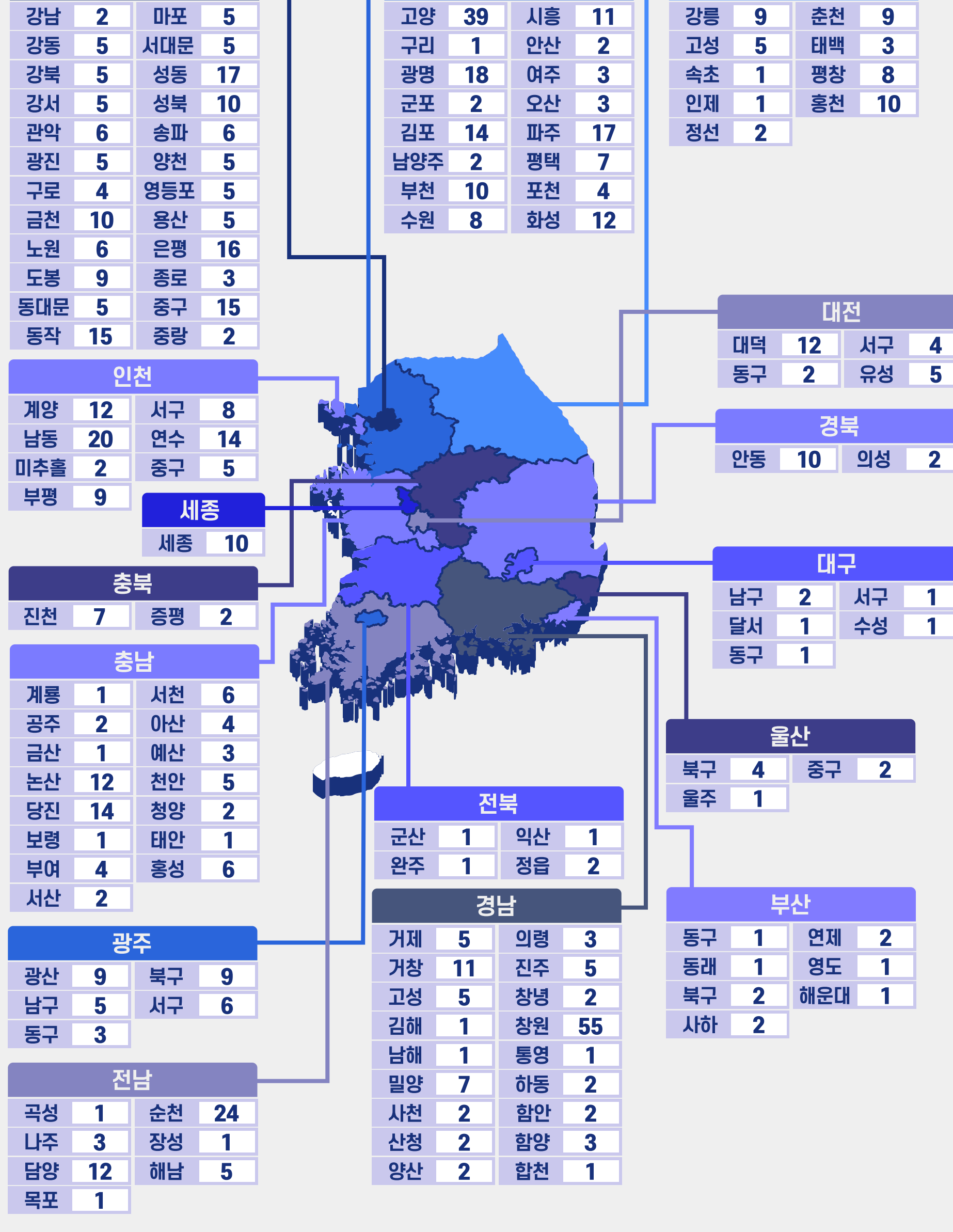
[2017.7 ~ 현재]

'17년 12월 83개, '19년 6월 214개, '20년 6월 626개, '21년 6월 777개 읍면동에서 실시

## 1·2단계와 3단계 비교

구분	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	
	1·2단계 ('13.7월~'17.6월)	3단계 ('17.7월~현재)
주민자치회의 권한	협의업무, 수탁업무, 주민자치업무의 수행	주민자치업무, 협의업무, 수탁업무의 수행, 운영세칙 제정, 자치계획 수립 및 집행, 주민총회 개최
주민자치회의 기능	1.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 밀접 관련 업무에 대한 협의 2.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. 기타 각종 교육 활동, 행사 등 순수 주민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	1. 주민총회 개최, 자치(의)계획 수립, 마을축제, 공동체 형성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.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 관련 업무에 대한 협의업무 3.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업무의 수탁 처리
주민자치회의 기관	주민자치회 위원 분과위원회(위원들로 구성) 없음	주민자치회 위원 분과위원회(위원과 참여 희망 주민으로 구성) 분회(지회) 및 사무국 설치
위원선정	위원선정위원회 구성 위원공개모집과 추천 (읍면동장, 이통장협의회, 지역대표연합단체) → 주민자치위원 위촉(읍면동장)	위원선정위원회 폐지 위원공개모집 원칙 → 주민자치교육이수(6시간 이상) → 공개추천 →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(시군구청장)
공무원 파견	없음	주민자치분야 전담인력, 전문직위 또는 임기제 공무원
읍면동장의 의견제출권	있음	없음

## 전국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현황 (21년 6월, 총 777개 읍면동)



##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간 제도 비교

구분	주민자치회	주민자치위원회
위상	읍면동 민관협치기구 주민자치 대표기구 및 협의·실행기구	읍·면·동 장의 자문기구
법적근거	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-제29조 시군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	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(별표: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: 읍·면·동 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무) 시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위촉권자	시장, 군수, 구청장	읍·면·동장
기능	주민자치사무, 협의사무, 수탁사무, 자치계획수립, 주민총회 개최 등	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, 심의(문화·복지·편익기능 등)
조직	일반 주민참여 가능한 개방된 분과위원회, 지역기반 분회 조직, 타 주민자치회와 협의체 구성	분과위원회의 주민개방성 없음
재정	자체재원(회비, 수익, 위탁사업 수입, 사용자 등), 주민세, 주민참여예산제 활용 등 다양	읍·면·동사무소 지원 외에 별도 재원이 거의 없음(주민자치센터 보조금)
자치단체와의 관계	자치단체와 협력적 관계	읍·면·동 주도로 운영

#주민자치회 #읍면동 #주민총회

#마을계획 #자치계획

[자료출처]

최인수, 전대욱(2020),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연구, 한국지방행정연구원

[내용문의]

최인수 (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, 033-769-9850, ischoi@krla.re.kr )